

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63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6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9년 3월 26일 정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495), 2019년 3월 29일 최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512)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 3. 7)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입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근거 및 감면율을 명시하고,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이 미취업 청년 창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 임대료를 감면 또는 최소한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시점을 6월 5일 이후에 체결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부터로 규정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근거 및 감면율을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른 100분의 50으로 정함(안 제13조제3항).
-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장이 미취업 청년 창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).
- 개정안의 시행일과 적용시점을 6월 5일 이후에 체결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 계약부터로 함(부칙).

#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과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
-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) ①·② (생략)	제13조(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
<신설>	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·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.
<부 칙>	<부 칙>
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